「헌법」

□ 개 요

룩셈부르크 최초의 헌법은 1941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1848년과 1856년에 두 차례 개정되었다. 현재의 헌법은 1868년 19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2일에 공포되었고, 이후 37차례 개정되었다. 헌법은 총 12개 절, 12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, 시민과 공권력을 가진 기관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등을 명시한다. 룩셈부르크 헌법은 헌법조문과 판례가 함께 묶인 통합본으로 제공되며 이 요약본은 2016년 10월 18일 개정사항을 반영한 2016년 10월 20일 통합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.

□ 목 차

원문	번역문
Chapitre Ier. – De l'Etat, de son territoire et du Grand–Duc (Art. 1er à 8)	제1절 – 국가, 영토 및 대공(제1조부터 제8조)
Chapitre II. – Des libertés publiques et des droits fondamentaux (Art. 9 à 31)	제2절 – 공공의 자유와 기본권(제9조부터 제31조)
Chapitre III. – De la Puissance souveraine (Art. 32 à 49bis)	제3절 – 주권(제32조부터 제49조의2)
§ 1er. – De la Prérogative du	제1단 – 대공의 대권(大權)

Grand-Duc	
§ 2. - De la Législation	제2단 - 입법권
§ 3. - De la Justice	제3단 - 사법권
§ 4. - Des pouvoirs internationaux	제4단 - 국제법에 따른 권한
Chapitre IV. - De la Chambre des Députés (Art. 50 à 75)	제4절 - 의회(제50조부터 제75조)
Chapitre V. - Du Gouvernement du Grand-Duché (Art. 76 à 83)	제5절 - 대공 정부(제76조부터 제83조)
Chapitre Vbis. - Du Conseil d'Etat (Art. 83bis)	제5절의2 - 국사원(제83조의2)
Chapitre VI. - De la Justice (Art. 84 à 95ter)	제6절 - 사법권(제96조부터 제95조)
Chapitre VII. - De la Force publique (Art. 96 à 98)	제7절 - 공권력(제96조부터 제98조)
Chapitre VIII. - Des Finances (Art. 99 à 106)	제8절 - 재정(제99조부터 제106조)
Chapitre IX. - Des Communes (Art. 107 et 108)	제9절 - 코뮌(제107조부터 제108조)
Chapitre X. - Des Etablissements publics (Art. 108bis)	제10절 - 공공기관(제108조의2)
Chapitre XI. - Dispositions générales (Art. 109 à 115)	제11절 - 총칙(제109조부터 제115조)
Chapitre XII. - Dispositions transitoires et supplémentaires (Art. 116 à 121)	제12절 - 경과규정 및 보충조항(제116조부터 제121조)